

[별표 16]

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장비·기술능력
(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)

구 분	장 비	기 술 능 력
1. 운행차 정기 검사대행자	가.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착기기 1조 이상 나.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	가.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,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,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,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소음·진동산업기사 이상 중 1명 나.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또는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또는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중 1명
2. 확인검사 대행자		가.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,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,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,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소음·진동산업기사 이상 중 1명 나.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,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이상,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또는 소음·진동기능사 이상 중 1명

참고

1. 기술능력 및 장비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27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장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기술능력 및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.
2.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 기능사 기술자격의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,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.
3.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와 확인검사대행자로 동시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4.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란 중 2.의 기술능력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제1항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.